
서연오��비전 인권경영 정책

(Business and Human Rights Policy)

제개정 이력	개정번호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주요 제개정 내용
	0	2021.04.01	2021.04.01	초도 제정(명칭 : 인권헌장)
	1	2025.01.02	2025.01.02	개정(명칭 및 표시방법 변경)

목 차

1. 개요

- 1.1 제정 목적
- 1.2 적용 범위
- 1.3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2. 기본원칙

- 2.1 차별금지
- 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2.3 근로조건 준수
- 2.4 역량 개발
- 2.5 인도적 대우
- 2.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2.7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2.8 산업안전 보장
- 2.8 지역주민 인권 보호
- 2.10 고객 인권 보호

3. 추진체계

- 3.1 고충처리 절차 운영
 - 3.1.1 인권침해 신고·접수
 - 3.1.2 인권침해 신고 처리
 - 3.1.3 신고인 신분보장
 - 3.1.4 고충처리 이의 제기
- 3.2 교육

4. 부칙

1. 개요

1.1 제정 목적

서연오토비전은 인권경영을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 정책을 선언한다.

1.2 적용 범위

본 인권정책의 적용 범위는 서연오토비전 국내·외 생산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서연오토비전 임직원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본 인권정책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해당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 정책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연오토비전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서연오토비전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담당부서를 주관으로 본 인권정책에 따른 인권 관리 체계의 구축, 인권 리스크의 평가 및 개선, 관련 정보의 이해관계자와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기본원칙

2.1 차별금지

서연오토비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 또한 회사는 임직원이 문화, 종교 등과 관련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한다.

2.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서연오토비전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2.3 근로조건 준수

서연오토비전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 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임직원의 보수는 임직원이 거주 중인 국가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임직원 및 가족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정 및 지급한다.

2.4 역량 개발

서연오토비전은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

며, 직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2.5 인도적 대우

서연오토비전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2.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서연오토비전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2.7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서연오토비전은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시 당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개별 국가의 법,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연소 근로자가 근로 행위로 인하여 교육 기회를 제한 받지 않도록 한다. 만일, 임직원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는 경우 즉시 인권담당조직에 이를 알리고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 및 보호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2.8 산업안전 보장

서연오토비전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9 지역주민 인권 보호

서연오토비전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자의 자유를 보호한다.

2.10 고객 인권 보호

서연오토비전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3. 추진체계

3.1 고충처리 절차 운영

3.1.1 인권침해 신고·접수

서연오토비전은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3.1.2 인권침해 신고 처리

서연오토비전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신고 채널

- 부서명 : 인사노무팀
- 이메일 : m2521@seoyonauto.com

3.1.3 신고인 신분보장

서연오토비전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마련한다.

3.1.4 고충처리 이의 제기

인권침해 신고 후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엔 본 인권침해 신고 채널을 통해 재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이의 제기시엔 이전 고충처리 결과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입하도록 한다.

3.2 교육

서연오토비전은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 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임직원간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4. 부칙

4.1 본 인권경영 정책은 2021년 04월 01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4.2 본 인권경영 정책은 2025년 01월 02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